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
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재갑 (고용노동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(법률 제16270호, 2021.1.5. 공포, 2021.7.6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개정된 용어를 반영하고, 현행 시행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3조 개정)

나.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노동조합 공고 방법(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) 명시(안 제7조)

다. 단체교섭 절차 및 교섭창구 단일화 세부규정 마련(안 제8조)

1) 조합원 수 비례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은 교섭노동조합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함

2) 노동조합간 조합원 수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지방관서의 장에게 조합원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, 신청을 받은 기관은 교섭노동조합 및 정부교섭대표에게 통지하고 관련 사실을

조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함

3) 창구단일화를 위한 조합원수 산정은 재직자를 기준으로 함

4)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성실히 협의하여 20일 내에 교섭위원을 선임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다른 공무원에”를 “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”을 “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“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는 교섭을 요구받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.”를 “정부교섭대표는 제6조에 따른 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공고”를 “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”로 하다.

제8조제1항 중 “교섭위원을”을 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교섭위원(이하 ‘교섭위원’이라 한다)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선임화되”를 “선임하는 방법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한다. 다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교섭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때에는 상호간

조합원 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고,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.

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때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.

⑤ 교섭노동조합간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조합원의 수는 제7조제3항의 교섭노동조합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수로 산정한다. 다만,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조합원 1명을 각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산입한다.

1.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: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한다.
2.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: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한다.

⑥ 제5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조합원 명단을 해당 정부교섭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지체없이 해당 교섭노동조합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.

⑦ 교섭노동조합은 제2항 및 제3항,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에 대하여 이견이 계속되거나 제4항에 따른 기간내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관할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조합원 수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교섭, 전국 규모 교섭의 경우: 고용노동부장관
2. 제1호 외 교섭의 경우: 정부교섭대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

⑧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모든 교섭노동조합과 해당 정부교섭대표에게 통지하고, 조합원 명부(제5항의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말한다)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·확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합원 수의 확인을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.

⑨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교섭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확인한다.

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조합원 수 산정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

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전단 중 “공무원”을 “공무원(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공무원”을 “공무원(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단체교섭 요구 및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단체교섭이 요구되어 그 교섭이 진행 중인 경우 그 교섭 절차 등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) 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조(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<u>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</u> ·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. · 나. (생략)	1. <u>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<u>교정·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</u>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. ~ 라. (생략)	3. ----- <u>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</u> ----- ----- -----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제7조(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) ① <u>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섭 요구사실의 공고는 교섭을 요구받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.</u>	제7조(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와 교섭 참여) ① <u>정부교섭대표는 제6조에 따른 교섭을 요구받은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이 알 수 있도록</u>

② (생략)

③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른 교섭 요구 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섭 요구를 한 노동조합(이하 “교섭노동조합”이라 한다)을 공고하고,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8조(교섭위원의 선임) ① 교섭노동조합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정부교섭대표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교섭위원의 수는 조직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, 10명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할 때 교섭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교섭노동조합 간

지체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교섭위원의 선임) ① -----
-----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교섭위원(이하 ‘교섭위원’이라 한다)을-----

-----.

② -----

의 합의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되,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 안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---- 선
임하는 방법으로 교섭창구를 단
일화하여야 한다. 다만, -----

-----.

③ 교섭노동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때에는 상호간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하고,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해야 한다.

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때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.

⑤ 교섭노동조합간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원 수 산정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조합원의 수는 제7조제3항의 교섭노동조합 공고일 이전 1개월 동안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

<신 설>

<신 설>

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의 수로 산정한다. 다만, 둘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조합원 1명을 각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산입한다.

1.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: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한다.

2.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: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한다.

⑥ 제5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경우 교섭노동조합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조합원 명단을 해당 정부교섭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지체없이 해당 교섭노동조합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.

⑦ 교섭노동조합은 제2항 및 제

<신 설>

3항,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에 대하여 이견이 계속되거나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교섭위원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관할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조합원 수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 교섭, 전국 규모 교섭의 경우: 고용노동부장관

2. 제1호 외 교섭의 경우: 정부 교섭대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

⑧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모든 교섭노동조합과 해당 정부 교섭대표에게 통지하고, 조합원 명부(제5항의 「전자금융거래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의 방법으로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을 말한다)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

<신 설>

<신 설>

제14조(다른 대통령령과의 관계)

① 공무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

조합원 수에 대하여 조사·확인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합원 수의 확인을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수를 확인하여 제7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교섭노동조합에 알려야 한다.

⑨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교섭노동조합이 서류 제출 등 필요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조합원 수를 확인한다.

⑩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조합원 수 산정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.

제14조(다른 대통령령과의 관계)

① 공무원(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-

-----.
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고용노동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“행정관청”이라 한다)”은 “고용노동부장관”으로, 같은 영 제9조제3항·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“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단체”는 각각 “해당 기관의 장”으로, 같은 영 제10조제4항 중 “사업 또는 사업장”은 각각 “기관”으로, 같은 영 제29조제1항 중 “노동위원회”는 “중앙노동위원회”로, 같은 영 제30조제1항 중 “중재위원회”는 “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”로, 같은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”은 “연합단체인 노동조합,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·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의 노동조합, 그 밖의 전국 규모의 단위노동조합”으

로, 같은 항 제14호 중 “법 제96조”는 “법 제96조(같은 조 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)”로 보고, 같은 영 중 “근로자”는 각각 “<u>공무원</u>”으로, “<u>행정관청</u>”은 각각 “<u>고용노동부장관</u>”으로 본다. ②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“<u>공무원(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</u>”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7981